

인천광역시의회규칙(공포)

□ 제 명 :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

□ 개정이유

- 가.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사진행 방식을 회의규칙에 명문화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,
- 나. 「지방자치법」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입법예고 절차나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본회의는 1일에 1차 회의를 가지도록 하였고,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(제14조)
- 나. 의사일정의 순서변경과 안건 추가를 의사일정 변경으로 정하고 있으나, 특정안건의 상정을 유보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삭제도 가능하도록 함(제18조)
- 다. 의원발의 조례안은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되,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예고절차 생략이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(제22조의2)
- 라.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이후 가결된 안건을 부결하기 위한 취지의 번안이나 부결된 안건을 가결하기 위한 취지의 번안은 불가하나, 그 의결안건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기 위한 번안은 가능하므로 국회법을 준용하여 의원발의 안건 외에도 위원회 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도 번안이 가능하도록 정비함(제28조)

- 마. 위원회 심사나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의장제의 안건 등의 범위를 정함(제29조)
- 바. 동일 의제에 대하여 의원은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,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(제37조)
- 사.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나, 이의유무 방식에 의한 표결은 예외로 함(제43조)
- 아. 의원은 표결에 있어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으나,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기 조작 실수 등으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표시한 의사를 취소 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(제45조)
- 자. 의장,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지는 당해 의원의 임기동안 보관하고, 투표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(제47조의2)
- 차.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되,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도록 함(제50조)
- 카. 영구보존 회의록은 의회에 보관하되, 부득이한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함(제51조)
- 타.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되, 그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의장과 소속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함(제54조)
- 파. 본회의 개의시간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과 협의하도록 함(제55조)
- 하.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시장·교육감이 제출한 다른 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하도록 함(제58조)
- 가.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하도록 함(제58조의2)

- 나.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 중 소속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표결에 있어 발의 위원도 표결권을 가지도록 함(제61조)
- 다. 위원회가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방법을 준용하도록 함(제66조)
- 라.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본회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(제67조의2)
- 마.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였으나, 경유절차 없이 신속히 요구하도록 하였고, 불출석 또는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늦어도 1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(제73조)
- 바. 시정질문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의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질문방식과 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였고, 서면질문·구두답변 방식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(제73조의2)
- 샤. 시장·교육감은 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서를 늦어도 답변시작 3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,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례회 회기 중에 보고하도록 함(제73조의3)
- 야. 서면질문·서면답변 제도는 연중 운영하고, 시장·교육감은 의원이 서면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함(제74조)
- 자. 장애인과 단체방청인은 방청권 교부시 기재 사항 일부를 생략하거나 사무처 직원이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청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(제85조)
- 차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와 조문 등을 정비함(제86조 및 제87조의2 등)

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(제1차 정례회) 제5차 본회의(2013. 7. 11.)
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이 성 렵

2013년 7월 15일

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21호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회 의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

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본회의는 1일에 1차 회의를 가지며, 산회나 유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 본문 중 “다른”을 “특정”으로 하고, “추가”를 “추가 또는 삭제”로 한다.

제22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의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

그 취지, 주요내용, 전문을 시보나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입법예고의 방법, 절차 등은 「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」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장”은 “의장”으로 본다.

제2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수정·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안동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.

1.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번안동의를 발의한 경우
2. 위원회 제안 또는 시장·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번안 요구가 있는 경우

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를 소속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,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.

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번안동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당해 안건은 이미 의결된 내용대로 확정되고, 그 안건에 대하여는 다시 번안할 수 없다.

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나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한다.

1. 선거 및 사임 동의
2. 불신임 및 회기 중 사직 허가
3. 위원 선임·개선 또는 보임

4. 5일 초과 청가 허가
5. 결산검사위원 선임
6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
7. 재의 또는 본회의 의결안건 번안
8. 행정사무조사 발의
9. 시정질문 및 추진상황 보고
10. 재정 및 인력 관련 보고
11. 본회의 출석 요구
12. 회기 결정 및 휴회 결의
13. 의안 정리권 위임
14.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
15. 본회의 투표지 공개
16. 위원회 개회 요구
17. 위원회 폐기의안 재심의
18. 본회의 비공개회의 동의
19. 본회의 경찰관 파견요구 동의
20. 그 밖에 본회의가 직접 심의하기로 의결한 안건

제37조 제목 중 “발언회수”를 “발언횟수”로 하고, 본문 중 “의장이 허가”를 “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”로 한다.

제43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의유무 방식에 의한 표결을 할 때 이의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45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2(투표지의 보관 및 공개) 의장은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지는 당해 의원의 임기동안 봉인하여 보관하고, 투표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50조 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,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개회식에 관한 사항
2. 개의·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
4.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
5. 출석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

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하되,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.

제5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하고, 의회에 보존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.

제54조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장과 소속 위원에게 통지(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5조(위원회의 개회)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개회한다. 다만, 본회의 개의시간 중에 개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58조 제1항 중 “전문위원(전문위원을 두는 경우)”을 “전문위원”으로 하고, “질의·토론·축조심사”를 “질의·토론 및 축조심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에 시장·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시장·교육감이 제출한 다른 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.

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 2(위원회 회의의 공개)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위원 2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 중 소속 위원이 그 안건을 발의한 경우 발의 위원도 표결권을 가진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하였거나 자발적으로 회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6조 제1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출석한 공무원 또는 증인·감정인·참고인·진술인의 성명

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7조의2(준용규정)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본회의”는 “위원회”로 보고, “의장”은 “위원장”으로 보며, “의회운영위원회”는 “위원 간담회”로 본다.

제73조 제2항 중 “의장을 경유하여 시장·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”을 “시장·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계공무원”을 “관계공무원 등”으로, “사전제출”을 “늦어도 1일 전까지 제출”로, “관계공무원”을 “관계공무원 등”으로 각각 한다.

제73조의2 제4항 중 “일괄질문·일괄답변”을 “일괄질문·일괄답변과 서면질문·구두답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질문”을 “해당 질문”으로, “양해를 구하여”를 “양해가 있는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의장은 효율적인 질문을 위하여 의원이 일괄질문·서면답변이나 서면질문·구두답변을 병행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3(답변 및 추진상황 보고 등) ① 시장과 교육감은 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한하여 늦어도 답변시간 3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이를 답변이 시작되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.

② 시장과 교육감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답변을 듣는 도중에 보충질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과 교육감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그 추진상황(서면질문을 포함한다)을

관리하고 정례회 회기 중에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4조(시장·교육감에 대한 서면질문) ① 의원은 폐회나 휴회 기간에 관계없이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·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서면질문서를 지체 없이 시장·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, 제출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·교육감의 답변은 보충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제8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장애인과 단체방청인은 기재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처 직원이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.

⑤ 의장은 장애인의 방청을 허가한 경우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6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지한 자”를 “소지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87조의2 제목 “(준용)”을 “(준용규정)”으로 하고, 본문 중 “소관 위원회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, “소관 위원회 전문위원”을 “전문위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